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739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21. 9. 7.
제 안 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장상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30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오중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95 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655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이상 3건의 일부개정조례 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완화,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운영,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·운영 등의 사항을 개정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자연경관지구에서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, 소규모재건축사업 지역,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,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가

로주택정비사업 지역에 관해서는,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·공고한 구역에 한해 전폐율을 50%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9조제2항)

-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, 위원장 사전승인이 필요한 구청장 출석·발언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,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자치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함(안 제59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삭제)
-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, 회의 공개 대상·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함(안 제60조)
-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보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(안 제64조)
-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한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65조)
- 종전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 규정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른 임용·복무 관련 당연 규정을 각각 삭제함(안 제66조 및 제67조 삭제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(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(이하, 소규모주택정비법)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(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,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)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한한다)”를 “(이 항 제3호에 한함)”으로, “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”를 “완화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39조제2항제1호 중 “지역”을 “지역 : 건폐율 40퍼센트 이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“지역”을 “지역 : 건폐율 50퍼센트 이하”로 한다.

제39조제2항제3호 중 “소규모주택정비법”을 “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호 후단 중 “지역”을 “지역 : 건폐율 50퍼센트 이하”로 한다.

제59조제1항 중 “식견이 풍부한 자의”를 “해당 자치구 또는 관련 전문가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6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.
 1.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
 2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 공개 대상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64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를 기획단으로 본다.

제64조제2항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

제64조제2항제4호 중 “심사 및 자문”을 “심사·자문 및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사무”로 한다.

제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기획단에는 법 제116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한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제66조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
제3호에 따른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

3.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(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,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)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 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

③ ~ ⑧ (생략)

제59조(자료제출 및 제안설명) ①
시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해당 자치구의 도시계획
관련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

2. _____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59조(자료제출 및 제안설명) ①

----- 해당 자치구 또 -----
는 관련 전문가의 -----.

〈작제〉

인을 받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③·④ (생략)

제60조(회의의 비공개)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〈신설〉

〈신설〉

〈신설〉

제64조(설치 및 기능)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(이하 “기획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〈후단 신설〉

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·2. (생략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60조(회의의 비공개) 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.

1.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
2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 공개 대상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64조(설치 및 기능) ① -----

-----.
이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를 기획단으로 본다.

② -----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

가. ~ 마. (생략)

〈신설〉

4.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

제65조(기획단의 구성)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5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제66조(기획단의 운영 등)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.

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

3. -----
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
바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

4. ----- 심사·자문
및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사무

제65조(기획단의 구성) 기획단에는
법 제116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
한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
둘 수 있다.

〈삭제〉

〈삭제〉

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·감독을 한다.

제67조(임용 및 복무 등) ① 기획단

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, 복무 등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른다.

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〈삭 제〉